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13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이규선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
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규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하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,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·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- 나. 주요내용
-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- 지하수 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규정(안 제4조)
-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및 보전구역의 관리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(안 제8조~제11조)
-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규정(안 제12조)
- 지하수관측정 설치운영 규정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재)

- 본 조례안은 「지하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·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O 주요 제정 내용은
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4조에서 지하수 개발·이용 신청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5조~제6조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전구역 관리를 위하여 위반 행위나 지하수 오염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
- 안 제7조에서는 수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하수 개발 ·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고

- 안 제8조~제11조까지는 지하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 자문을 위한 지하수 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2조에서는 지하수 개발·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측정을 설 치하고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관측하도록 규정함.
- 2018년 12월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는 신고 11 9개소, 허가 33개소로 총 152개소 지하수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업종으로 오래전에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음.
- 본 조례안은 1994. 12. 10 제정된 「지하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조사, 지하수보전구역 관리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조치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건강 증진 등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,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 지자체에 위임된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부과는 기존 지하수 개발 이용자 중 현재 민생경제 어려움에 따른 부담금에 부담을 느껴 민원 제기 및 그에 따라 폐공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급수용 시설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본 조례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부과는 집행부 주관과인 환경과와의 협의과정에서 보류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65 번 호

발의년월일: 2018년 11월 일 발 의 자:이규선의원외 3명

1. 제안이유

「지하수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,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·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하수의 조사 규정(안 제3조)
- 다.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규정(안 제4조)
- 라.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및 보전구역의 관리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- 마.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(안 제8조~제11조)
- 바.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규정(안 제12조)
- 사. 지하수관측정 설치운영 규정(안 제13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:「지하수법」, 「지하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예산조치 필요 없음.
- 다. 입법예고(2018. 11. 14. ~ 11. 20.)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

-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하수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지하수의 수 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"지하수"란 지하의 지층(地層)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.
 - 2. "지하수영향조사"란 지하수의 개발·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.
 - 3. "지하수보전구역"이란 지하수의 수량(水量)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「지하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 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 - 6. "원상복구"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지하수의 조사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·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1.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
- 2. 지하수의 수위 분포
- 3.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
- 4. 지하수의 수질 특성
- 5.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
- 6. 기타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4조(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) 구청장은 「지하수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야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5조(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 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지정·변경·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
 - 2. 지하수 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
 - 3.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
 - ② 지하수 개발ㆍ이용자, 그 밖의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

정·변경·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·변경·해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내용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)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같은 구역안에서 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보전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7조(수질검사 부적합 조치)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하수관리위원회)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관리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
 - 3.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
 - 4.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

- 5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
 - 2.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
 - 3.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-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.
 -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.
- 제11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

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제12조(원상복구) ① 지하수 개발·이용자는 지하수 개발·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.
 - ② 지하수 개발·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개발·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에는 복구할 관정의 개발・이용자 또는 소유자, 폐공발생위치, 사유, 처리자, 복구일자 및 복구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④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·이용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업체, 공사사진 등 원상복구에 관한 서류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 - ⑤ 지하수 개발・이용자는 영 제2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)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과태료의 징수) 영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「질서

위반행위규제법」을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